

신구조문대비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 [2023.03.16. 전부개정]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 [2024.03.11. 일부개정]
<신 설>	제2절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회 제10조(감사위원회의 의무)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감사대상단위에 숙지시켜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 시행 일시 최소 24시간 이전, 온라인 공고를 통해 참관인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참관인 지원자가 없는 때에는 참관인 없이 감사를 진행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의결한 모든 사항과 최종 감사결과를 전체 학생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학생회칙 및 기타 관련 세칙과 감사실무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감사위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감사회의의 의결로써 감사대상단위의 징계의 발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u>감사위원회는 해당 임기동안의 구체적인 감사 기준 마련을 위해 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령」을 심의하고, 심의를 마친 일자부터 7일 이내에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한다. 또한 의결을 받은 당일부터 48시간 이내에 감사시행령을 공포해야한다. 논의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u> <u>1. 감사위원회의 감사 시행 기조</u> <u>2. 감사 자료로써의 인정 기준</u> <u>3. 제출하지 못하는 감사자료에 대한 갈음 요건</u> <u>4.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일체</u>

개요

2022년 9월에 제정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은 학생회의 임기마다 감사시행의 지향점과 자구 해석의 문제로 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후대 학생회로 넘어갈수록 입법자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을 할 여지, 당대 학생회의 원활한 감사 시행, 학과 단위의 원활한 감사자료 준비, 잦은 감사시행세칙 개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령」을 신설해 당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규정하는 재정 운용과 감사시행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된 이유로는 총학생회의 감사 시행 방식이 점수제 감사에서 서술식 감사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회도 총학생회의 전체적인 기조에 따라 기존 점수식 감사 시행에서 서술식 감사시행으로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사의 전체적인 기조가 변했기에 사회과학대학도 이를 유동적으로 따라가고자 본 시행령을 발의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을 인준받고, 대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감사 시행의 규칙이 단과대학 차원의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동안 개정을 논의해 이와같은 결과로 도출되었기에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회의 인원만으로는 본 임기 안에 완벽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의 전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총학생회의 기준이 대대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과학대학도 총학생회의 기조를 따라가는데 있어 유동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감사위원회의 일부의견이 있었고, 총학생회 감사 시행의 기조가 변경되어도 이를 유동적으로 따라가기 위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목적

1. 당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추구하는 재정운용의 방향성과 감사 시행의 기준을 명문화하고 재정운용과 감사시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학생회 임기마다 발생할 자구 해석의 기준과 감사자료 준비의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학과 학생회 및 동아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의 잦은 개정을 방지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4. 총학생회와 확대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체개정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 및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의 기조를 따라가기 위해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을 전체개정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대 총학생회 감사 시행의 전체적인 기조가 변경되면 우리의 세칙을 개정하기 위해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술한 문제를 간소화하고, 자구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사회과학대학 감사 시행에서 감사 시행에 대한 명확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5. 감사 기준 및 징계의 수위를 명문화 해 징계의 근거사항으로 활용하고 감사위원 성향에 따른 징계 및 집행처분을 평준화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의 구조적 기능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44조 (운영세칙) 2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 제10조(감사위원회의 의무) 5항에 근거해 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령」순서의 위계가 됩니다. 감사시행령은 감사시행세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전반적인 감사 시행의 기초, 감사 자료로써의 인정 기준,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감사 자료의 갈음 요건, 그 이외에 감사시행세칙에서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령」의 목적, 감사 시행의 기초, 징계의 수위, 징계의 양형 기준, 집행 명령, 감사자료의 인정, 누락된 감사자료의 처리, 감사자료 작성의 미기입 및 오기입, 예산안 및 추경예산 의결, 예산안 및 추경예산 미인준의 처리

시행 및 종료 일자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첫 회기의 감사 시행은 감사위원회와의 세부논의 및 입법 취지 명문화를 위해 2024학년도 2분기 회기가 종료되기 30일 이전부터 시행되며, 학생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령」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후대 학생회의 감사시행령의 기준은 후대 학생회의 임기가 시작한 이후 30일 이내로 감사위원회와의 협의 후 결정하며, 7일 이내에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의안의 가결이 이루어진 이후 48시간 내에 공포를 해야하며, 공포를 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근거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44조 (운영세칙) 2항,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 제10조(감사위원회의 의무) 5항